

거주지 신고를 하지 않는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 체류자격을  
취소하지 않는 구체적 사례에 대하여

2012년 7월

법무성 입국관리국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이하 ‘입관법’) 상의 체류자격을 갖고 일본에 중장기간 체류하는 외국인(구체적인 범위는 후술 참조)은 새로 상륙한 날에 체류자격 변경허가 등에 의해 중장기 체류자가 된 날 또는 신고한 거주지에서 퇴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거주지(일본 내에서 주로 거주하는 소재지를 말합니다)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거주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체류자격 취소 대상이 됩니다(입관법 제22조의4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 참조).

법무성 입국관리국에서는 체류자격 취소제도에 대한 투명성을 높인다는 관점에서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 체류자격을 취소하지 않는 주요 사례를 아래와 같이 공표하기로 하였습니다(체류자격을 취소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개별적·구체적 상황을 토대로 이루어지며, 반드시 후술하는 구체적 사례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체류자격을 취소하지 않는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는 향후 체류자격 취소제도의 운용 상황을 토대로 필요에 따라 추가할 예정입니다.

— 아래 —

1. 근무하던 회사가 갑작스레 도산하거나 파견계약 만료 등으로 인해 주거를 잃어 경제적 곤란 등을 겪고 있는 탓에 새로운 거주지를 정하지 못한 경우
2. 배우자의 폭력(이른바 가정폭력)을 이유로 몸을 피할 필요가 있거나 보호가 필요한 경우
3. 질병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입원중인 경우 등 의료상의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며, 본인을 대신하여 신고를 해줄 사람이 없는 경우

4. 전출 후 급한 출장 때문에 재입국·출국한 경우 등 재입국 허가(간주 재입국 허가 포함)를 받아 출국한 상태인 경우
5. 출장이 자주 반복되고 1회당 일본 체류기간이 짧은 등 체류활동의 성질상 거주지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

<중장기 체류자의 범위>

입관법 상의 체류자격을 갖고 일본에 중장기간 체류하는 외국인으로서 다음 ①~⑤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분

- ① 체류기간이 ‘ 3개월’ 이하로 결정된 분
- ② 체류자격이 ‘ 단기체류’ 로 결정된 분
- ③ 체류자격이 ‘ 외교’ 또는 ‘ 공용’ 으로 결정된 분
- ④ 상기 ①부터 ③의 외국인에 준하는 분으로서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자
- ⑤ 특별영주자

<입관법 상의 규정>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초록)

(체류자격 취소)

제22조의4 법무대신은 별표1 또는 별표2의 위쪽 란의 체류자격을 갖고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제61조의2 제1항의 난민 인정을 받은 자는 제외)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어느 하나의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외국인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체류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7. (생략)

8. 전장(前章) 제1절 혹은 제2절의 규정에 따른 상륙허가의 증명 도장 혹은 허가, 이 절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제50조 제1항 혹은 제61조의2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고, 새롭게 중장기 체류자가 된 자가 해당 상륙허가의 증명 도장 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무대신에게 거주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신고를 하지 않

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9. 중장기 체류자가 법무대신에게 신고한 거주지에서 퇴거한 경우에 해당 퇴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무대신에게 새로운 거주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10. (생략)